

사전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
	연락처			
	사전등록 대상 아동등과의 관계			
등록대상 아동등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
	연락처			
폐기 신청 사유				
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「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등의 사전등록 정보의 폐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경찰청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위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1. 이 신청에 따라 사전등록 정보를 폐기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정보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- 2. 해당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다시 등록하려면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 및 「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